

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노무현 인

2006년 7월 19일

국무총리 한명숙

국무위원
법무부장관 천정배

○법률 제7965호

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

刑事訴訟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刑事訴訟法”을 “형사소송법”으로 한다.

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3조(국선변호인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

1. 피고인이 구속된 때
2.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
3.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
4.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
5.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
6. 피고인이 사형,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

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

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·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

제201조의2의 제목 “(拘束令狀請求와 被疑者審問)”을 “(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.

⑩법원은 변호인의 사정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.

제282조의 제목 “(必要的 辯護)”를 “(필요적 변호)”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死刑, 無期 또는 短期 3年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該當하는 事件”을 “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·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”으로 한다.

제16298호

관

부

2006. 7. 19. (수요일)

제283조의 제목 “(國選辯護人)”을 “(국선변호인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第33條 各號의 境遇 또는 前條의 境遇에 辯護人이 없거나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”을 “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 다만,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◇형사소송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선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는 헌법 정신을 구체화하고 형사 절차에서 침해될 수 있는 인신의 자유, 절차적 기본권 등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, 법원은 구속영장심문을 받는 피의자, 구속 피의자 또는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,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노무현 인

2006년 7 월 19일

국무총리 한명숙

국무위원
행정자치부 이용섭
장관

●법률 제7966호

輕犯罪處罰法 일부개정법률

輕犯罪處罰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輕犯罪處罰法”을 “경범죄처벌법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국고”를 “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”로 한다.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”을 “경찰서장,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”으로 하고,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본문 중 “대리점 또는 우체국”을 “대리점,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동항제1호 중 “각호의 1”을 각각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